

정보교류차단 내역

2021. 5. 20.기준

구 분	내 역
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	1.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관련 예외 1)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)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총액과 증권에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)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)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)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2.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전의 정보 관련 예외 1)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)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5 영업일이 지난 정보 3)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	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운용부서 단, 내부통제기준에 의거하여 부동산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므로, 부동산에 투자하는

	집합투자기구를 설정/운용하는 부서(부동산 관련 경영업무 및 부수업무수행부서 포함)는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으로 보지 아니 함
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	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음
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	1.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 회사가 부동산 외 다른 종류의 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야 함 2. 대응방안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인 경우 거래 중단 여부,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
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	회사는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을 통해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함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책임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해당 거래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인지 판단하여 결정함